

의안번호	제898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5년 3월 12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898
----------	-----

제안연월일 : 2025년 3월 12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위촉 자문위원 외 전문가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문의 탄력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별지 서식(자문 의뢰서, 자문 검토보고서) 개정 및 활용 의무화로 자문 내용의 충실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문 의뢰·검토 과정에서 별지 서식 활용 의무화 및 위촉 자문위원 외 전문가 자문 가능 조항 신설(안 제5조)
- 자문 의뢰서·자문 검토보고서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규칙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위원회 의견 조회 완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자문요청 등) ① 위원회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다만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된 자문위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 등 자문 의뢰를 받은 전문가는 수임 받은 직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자문 계획 등에 대해 의사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위촉된 자문위원”을 “자문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위원”을 “자문위원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자문요청 등) ① 위원회는</u> <u>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필</u> <u>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u> <u>작성하여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u> <u>다.</u> <u>② 다만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u> <u>원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u> <u>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된</u> <u>자문위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u> <u>문할 수 있다.</u> <u>③ 자문위원 등 자문 의뢰를 받</u> <u>은 전문가는 수임 받은 직무에</u> <u>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u> <u>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u> <u>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u> <u>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자</u> <u>문 계획 등에 대해 의사입법담</u> <u>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u>
<u>제5조 (생 략)</u>	<u>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u>
<u>제6조(수당의 지급) ① 위촉된 자</u> <u>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u> <u>원회 활동 및 자문 등을 수행하</u> <u>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u> <u>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u>	<u>제7조(수당의 지급) ① 자문위원</u> <u>등-----</u> <u>-----</u> <u>-----</u> <u>-----</u>

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u>자문위원</u>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자료수집이나 현지활동 등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u>제7조</u>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자문위원</u> 등----- ----- ----- ----- ----- -----. <u>제8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	--

자문 의뢰서

과 제 명			요구부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추 천 전 문 가	성 명 (연락처)		전문분야	
	소 속 (직 책)		추천사유	
자문목적 및 배경				
자문내용				
관 련 법령 등				
활용계획				
검토기한		담당자	000 주무관(043-220-0000)	
참고사항				

※ 첨부서류 (위촉된 자문위원이 아닌 전문가 추천일 경우)

- 「충청북도의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자격증사본

자문 검토보고서

□ 과제명

○

□ 검토내용

1. 서 론

2. 이론적 · 일반적 배경

3. 실태분석

4. 해외사례 (선택적 사항)

5.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 위 보고서 서식과 다르게 검토보고서 작성 가능

※ 글씨 포인트(한글문서)

- 작성기준 : 글자크기 13, 줄 간격 160%, 상 · 하 여백 15, 좌 · 우 여백 20, 머리말 · 꼬리말 10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